

제2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록 공지 관련 안내	
1.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88호) 제4조의 3'에 의하여 이 회의록의 내용 중 위원의 인적사항은 위원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위 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 원문 전체를 공개합니다.	
3. 위 1항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한 위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회의록 전문은 위원의 임기가 소멸되는 2020년 1월 9일 이후 공개합니다. 다만, 위원으로 신분이 지속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분의 공개를 유보합니다.	

회의소집 일자	2019. 1.14.(월)
회의소집 방법	전화 및 문자메시지

1. 일시 : 2019년 1월 21일(월) 11:00 ~ 12:00
2. 장소 : 본관 2층 대회의실
3. 참석인원

구분	인원	위 원 명	배석직원
참석	6		기획팀장, 서기
불참	3		

4. 안건

- 가. 제1호 의안 : 2019학년도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안)
- 나. 제2호 의안 :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
- 다. 제3호 의안 : 잉여금 처리 원칙(안)

5. 회의내용

- 가. 개회 : 재적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 나. 본안심의

○ 위원장이 등록금 심의위원회 운영 설치근거 및 기능을 설명하고, **제1호 의안** '2019학년도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안)' 에 대한 세부 설명을 담당부서(기획팀장)에 요구하다.

○ ○○○, ○○○, ○○○ 위원이 회의자료에 대한 사전검토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위원장이 사전에 회의소집 안내를 하였으므로 연기가 불가하다는 설명에 3명의 위원이 퇴장하다.

○ 퇴장위원 3명을 불참 처리하여 참석인원을 6명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성원이 유지됨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다.

○ 기획팀장이 2019학년도 등록금 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회의자료에 근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다. 2019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은 다음과 같다.

2019학년도 계열별 등록금 책정(안)								
(단위 : 천원)								
구분	계열	2018학년도		인상률	2019학년도		인상금액	
		1학기	연간		1학기	연간	1학기	연간
입학금	신 입 생	625	625	-15.5%	528	528	-97	-97
수업료	인문사회1	2,560	5,120	0.0%	2,560	5,120	-	-
	인문사회2	2,930	5,860	0.0%	2,930	5,860	-	-
	자연과학	3,118	6,236	0.0%	3,118	6,236	-	-
	공 학	3,118	6,236	0.0%	3,118	6,236	-	-
	예 · 체능	3,118	6,236	0.0%	3,118	6,236	-	-
	평 균	2,885	5,770	0.14%	2,889	5,778	4.0	8.0

※ 대학 평균 등록금이 상승하여도, 계열별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봄

○ 위원들 상호간에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논의한 후, 원안대로 받자는 ○○○ 위원의 동의와 ○○○ 위원의 재청으로 위원장이 가, 부를 물으니 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2019학년도 입학금은 15.5% 인하,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의결하다.

○ 기획팀장이 **제2호 의안** ‘2019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및 계정과목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다.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정 과 목	2019 예산					2018 예산		증감 (A-B)
		등록금 회계	비등록금 회계	내부거래 제거	합계 (A)	비율(%)	금액 (B)	비율(%)	
수 입 부	1.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30,390	1,291		31,682	55.1	31,919	53.6	-237
	2. 전입 및 기부수입	0	20,925	2,440	18,485	32.1	19,741	33.1	-1,256
	3. 교육부대수입	0	2,585		2,585	4.5	2,395	4.0	190
	4. 교육외수입	160	816		976	1.7	1,014	1.7	-38
	5. 투자와 기타자산수입	0	1,916		1,916	3.3	1,466	2.5	450
	6. 고정자산매각수입	2	0		2	0	2	0.0	0
	7. 고정부채입금	0	90		90	0.2	20	0.0	70
	8. 미사용전기이월자금	970	834		1,804	3.1	3,008	5.1	-1,204
합 계		31,523	28,457	2,440	57,540	100.0	59,565	100.0	-2,025
지 출 부	1. 보수	17,710	2,542		20,252	35.2	20,186	33.9	66
	2. 관리·운영비	4,003	1,001		5,004	8.7	4,864	8.2	139
	3. 연구·학생경비	7,212	20,089		27,301	47.4	28,785	48.3	-1,484
	4. 교육외비용	155	10		165	0.3	165	0.3	0
	5. 전출금	1,700	740	2,440	0	0	0	0	0
	6. 예비비	30	20		50	0.1	50	0.1	0
	7.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0	2,635		2,635	4.6	2,923	4.9	-288
	8. 고정자산매입지출	713	1,287		2,000	3.5	2,435	4.0	-434
	9. 고정부채상환	0	100		100	0.2	50	0.1	50
	1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0	33		33	0.1	107	0.2	-74
합 계		31,523	28,457	2,440	57,540	100.0	59,565	100.0	-2,025

○ 이후 위원들이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후, ○○○ 위원의 동의와 ○○○ 위원의 재청으로 위원장이 가·부를 물으니, 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2019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은 수입·지출 각각 총액 57,540,000,000원으로 편성하기로 의결하다.

○ 제3호 의안 ‘잉여금 처리 원칙(안)’에 대해 기획팀장이 다음과 같이 잉여금의 산출내용과 처리원칙에 대하여 설명하다.

가. 잉여금 산출(추정)	
구 분	산출금액(천원)
2018회계연도 등록금회계 가결산기준 차기이월자금(A)	1,186,827
2019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자금예산(안) 기준 전기이월자금(B)	970,000
잉여금(A-B)	216,827
나. 잉여금 처리 원칙(안)	
등록금 회계 예산의 잉여금이 있을 경우 직접교육비(교육환경개선, 학생지원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계획임(다만, 선급금, 명시 또는 사고이월 등과 같이 그 집행용도가 정해진 경우는 제외)	

○ 이후 위원들이 논의한 후, ○○○○ 위원의 동의와 ○○○○ 위원의 재청에 전원 찬성으로 잉여금처리 원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다.

다. 회의록 수리 및 간서명자 선출

○ 제2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빔프로젝트 화면을 통하여 읽어본 후 위원장이 수리 여부를 물으니 ○○○○ 위원의 동의와 ○○○○ 위원의 재청에 전원 찬성으로 그대로 받기로 하다.

○ 회의록에 대한 대표 간서명자로 ○○○○ 위원과 ○○○○ 위원을 선임하자는 ○○○○의 동의와 ○○○○ 위원의 재청으로 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2명을 대표 간서명자로 선임하다.

라. 폐회

기타 다른 의견이 없어, ○○○○ 위원의 폐회 동의에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12:00분이 되다.

붙임 : 제2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 1부. 끝.

2019년 1월 21일

서명 미표시

(※ 성명과 서명의 미표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